

사익편취 방지 제도의 현황과 과제

- 공정거래법 제 23조의 2를 중심으로 -

2019.11.8.

고려대학교 기업지배구조연구소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김우진

사익편취 방지 제도 현황

공정거래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공시대상기업집단(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으로 한정한다)에 속하는 회사는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8.13] [시행일 : 2014.2.14] <개정 2017.4.18.>

1.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2.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3. 특수관계인과 현금, 그 밖의 금융상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4.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기존 부당내부거래(지원행위) 방지 조항

공정거래법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不公正去來行爲"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 12. 30., 1999. 2. 5., 2007. 4. 13., 2013. 8. 13.>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2.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6. 삭제 <1999. 2. 5.>
7.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나.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

사익편취 방지 제도 도입 배경

삼성 SDS 사례

- 99.10.28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 발행에 대한 공정위의 158억원 과징금 부과 처분: 대법원 무효 확정 판결
- 고법: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등 불공정거래..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공정거래저해성~경쟁제한성
- 대법원: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이 집중되는 등” → 사업자 요건 불요

현대 글로벌비스 사례

- 2001년 설립 (자본금 125.3억원, 2인주주), 05.12 상장: 시가 총액 2.3조원
- 재계: 거래 ‘물량’과 별개로 거래 ‘가격’이 적정하다면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 (IT 업종 등)
- 07.10.24 기존 조항에 의거, 624억원 과징금 부과: 대법원 485억원 확정
“부당..지원행위라 함은..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거래하거나, 현저한 규모로..거래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

사익편취 방지 제도 도입 배경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14. 2. 14.] [법률 제12095호, 2013. 8. 13.,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상 규제의 대상이 되는 부당지원행위는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를 통해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고 이로써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어, 그 지원행위가 현저히 유리한 정도에 미치지 못하거나 사업자가 아닌 특수관계인 개인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공정거래 저해성을 입증하는 것이 곤란하여 규제가 어려운 실정이며, 이러한 부당지원을 통해 실질적으로 이득을 얻는 수혜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수단이 없어 부당지원행위를 억제하는데 한계가 있는바, 부당지원행위의 성립요건을 완화하고, 부당지원을 통해 실제 이득을 얻은 수혜자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지 여부가 아닌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 금지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사익편취 방지 제도 도입 배경

◇ 주요내용

가. 부당지원행위의 성립요건을 종전의 현저히 유리한 조건에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로 변경함(안 제23조제1항제7호가목)

나. 부당지원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를 신설함(안 제23조제1항제7호나목)

다. 부당지원으로 이득을 얻는 수혜자에게 부당지원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지원을 받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23조제2항 신설)

라.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해 특수관계인이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와의 거래 등을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23조의2제1항 신설)

마.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거래 등의 상대방에 대해 그러한 이익을 제공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거래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23조의2제3항 신설)

바.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와 당해 거래 등의 상대방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2제2항 신설)

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와 당해 거래 등을 지시하거나 이에 관여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66조제1항제9호의2 신설)

사익편취 방지 제도 도입 배경

23조의2 신설 의의

- 판례상 공정거래저해성(경쟁제한성 or 경제력집중 등)을 요구하는 기존 23조제1항제7호 (부당지원행위)와 분리함으로써 동 요건의 충족 없이도 사익 편취를 규율할 수 있는 근거 마련

SDS Case에 대한 대응

- (1)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비시장가격 거래)와 (2) 사업기회 유용 (2) 상당한 규모의 거래(일감 몰아주기)를 분리함으로써 가격의 부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물량의 존재만으로도 규율 가능 근거 명문화

글로벌스 유사 Case에 대한 대응

	부당지원금지규제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 금지규제
관련 규정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법 제23조의2
규제내용	다른 회사 를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하는 행위 금지	총수일가 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금지 (*최초 법안에는 부당성 요건 없음)
지원주체	제한없음 (모든 사업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 현재 공시집단)
지원객체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 (계열회사 요건 불필요)	총수일가 또는 총수일가가 일정비율 이상 지분을 보유한 계열회사 (*최초 법안은 자연인만 대상)
금지행위 유형	①정상가격에 비해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②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회사를 매개로 거래(소위 통행세 행위)	①정상가격에 비해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② 사업기회 제공 ③합리적 고려나 비교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안전지대 여부	해당없음	①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 거래조건 차이가 7% 미만이고, 연간 거래금액이 50억원(상품·용역의 경우에는 200억원) 미만인 경우 ②상당한 규모의 거래 : 연간 거래총액이 거래상대방 평균매출액의 12% 미만이고 200억원 미만인 경우
부당성 판단	공정거래저해성 여부 입증 필요	부당성에 대한 별도입증이 불필요함

사익편취 방지에 대한 이론적 배경

- 1988년 이후 재무/금융학계에서 경영권의 사적 편익 (Private Benefits of Control)이라는 학술적 개념 대두 => 경영권 프리미엄의 이론적 존재 제시
- 사적편익의 유형에는 (1) 정신적 편익 (2) 시너지 (3) Perk (4) Tunneling 등이 논의되고 있으나, 국내에서 특히 문제되는 사적편익은 Tunneling임
- Tunneling은 다양한 방법으로 회사(주주)의 자산을 편취하여 경영진/지배주주 등에 이익을 제공하는 현상으로 (1) 횡령/배임을 통한 비자금 조성 (2) 비시장 가격 거래를 통한 부의 이전 (자산의 저가 매각, 고가 매입, 주식 저가 발행, 불공정한 합병 비율 등), (3) 회사기회의 유용, 일감몰아주기 등으로 나타남
- 이는 기본적으로는 기업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주주간 부의 이전 문제로, 원칙적으로는 회사법을 통해 민사 구제로 해결해야 할 것이나, 민사 구제의 활성화가 아직 미흡한 국내 현실상 공정거래법을 통한 보완적 규율 필요
- Tunneling은 단일 기업에서도 발생 가능하나(횡령/배임), 특히 지배주주의 각 계열사에 대한 지분 비율이 상이한 (대규모) 기업집단 체제 하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경제력 집중의 중요한 폐해 => 공정거래법에 의한 규율 정당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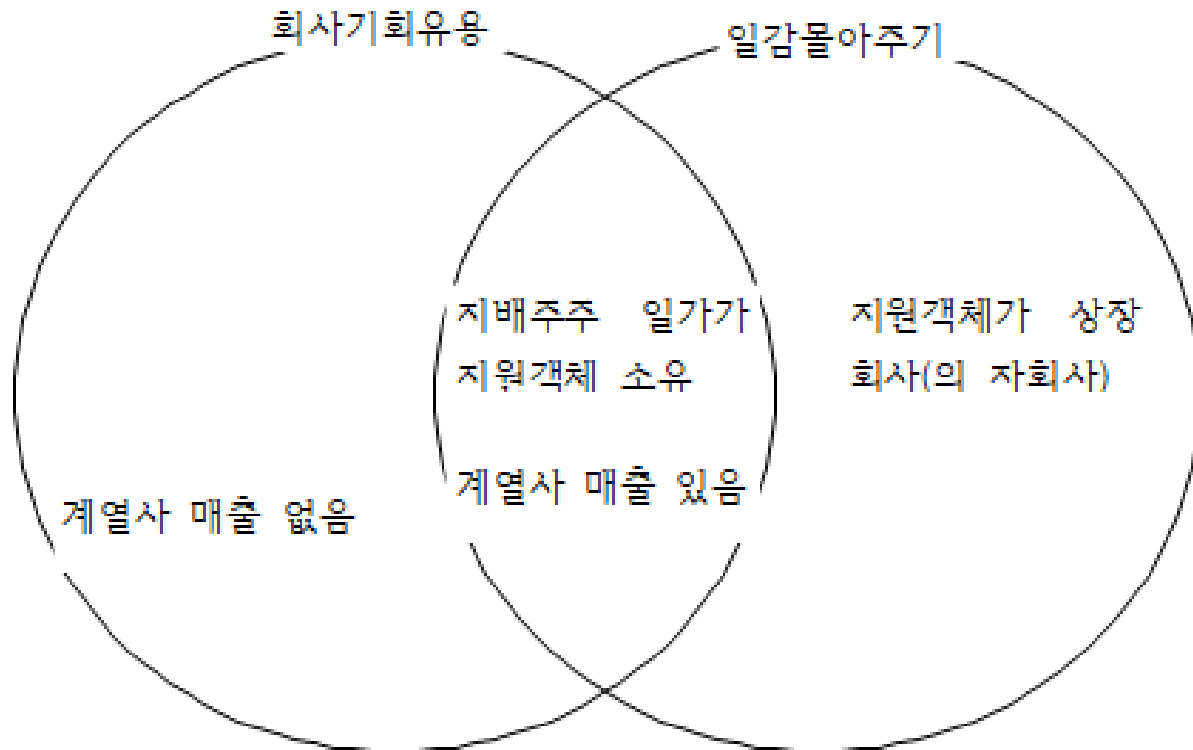
사익편취 방지에 대한 이론적 배경

회사기회 유용과 일감 몰아주기

- 영미법상 회사 기회 유용은 회사가 행할 수 있는 사업 기회를 회사 내부자 (임직원, 지배주주)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직접 활용할 수 없도록 하는 법리로, 종래 우리 상법에는 없었으나, 2011년 개정상법에서 도입 (이사회 의결 의무화, 손해배상책임 명시)
- 회사 기회 유용의 법리는 그 기회를 이사회에 공시할 것을 요구하되, 이사회가 소극적인 경우 내부자의 기회 활용 허용. 회사의 손해 여부는 요건이 아님
- 원칙적으로 개별회사에 적용되는 법리이며, 따라서 매출이 반드시 계열사에서 발생(일감몰아주기)할 것을 요구하지 않음
- 우리와 같은 기업집단 체제 하에서는 기업집단 공동의 사업기회(SI, 광고, 물류 등)로 확대 해석 가능

사익편취 방지에 대한 이론적 배경

□ 한편, 국내에서 통용되는 ‘일감몰아주기’는 기업집단 체제를 염두에 둔 개념으로 (1) 가격 여부, 또는 (2) 지원 객체가 누구인지에 관계없이, 특정 계열사가 기업집단 소속 타 계열사로부터 매출을 일으키는 현상을 지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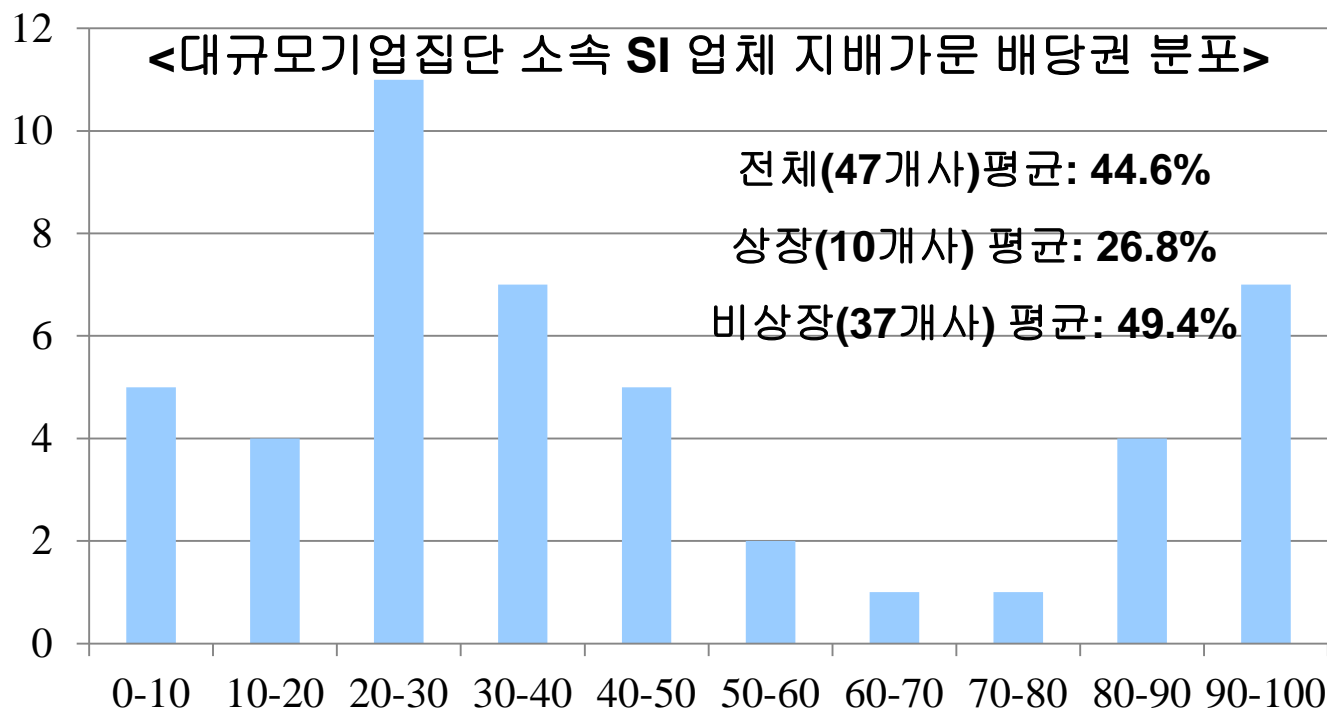


- 공정거래법상 사익 편취 규제 대상은 위 두 개념의 교집합에 해당
- 주로 IT 등 기업 집단 전체 계열사 대상 서비스 업종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
- 지원객체 지분의 상당 부분을 지배주주 일가가 직간접 보유하고 있는 것이 핵심 문제

사익편취 현황

업종명 (주요 세부업종)	내부거래 비중(%)			내부거래 금액(조원)		
	2010 (A)	2014 (B)	변동 (B-A)	2010 (C)	2014 (D)	변동 (D-C)
시스템통합관리업 (SI)	61.2	59.9	-1.3	6.7	8.4	1.7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물류)	46.4	33.5	-12.9	6.4	7.6	1.2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출처: TS2000 및 감사보고서, 간접지분을 포함)

Average profitability: pyramidal subsidiaries vs. stand-alones.

Panel A: All pyramidal subsidiaries vs. all stand-alones

	All pyramidal subsidiaries	All stand-alones	Difference	t-Statistics	N (pyramidal subsidiaries)	N (stand-alones)
EBITDA/total assets	4.8%	10.7%	-5.9%	-9.07	885	1,246
EBIT/total assets	-0.4%	5.0%	-5.4%	-9.34	1,232	2,403

Panel B: Chaebol subsidiaries vs. all stand-alones

	Chaebol subsidiaries	All stand-alones	Difference	t-Statistics	N (chaebols)	N (stand-alones)
EBITDA/total assets	3.8%	10.7%	-6.9%	-7.43	220	1,246
EBIT/total assets	0.9%	5.0%	-4.1%	-4.98	247	2,403

Panel C: Non-chaebol subsidiaries vs. all stand-alones

	Non-chaebol subsidiaries	All stand-alones	Difference	t-Statistics	N (non-chaebols)	N (stand-alones)
EBITDA/total assets	5.1%	10.7%	-5.6%	-7.79	665	1,246
EBIT/total assets	-0.7%	5.0%	-5.7%	-9.09	985	2,403

Panel D: Chaebol subsidiaries vs. non-chaebol subsidiaries

	Chaebol subsidiaries	Non-chaebol subsidiaries	Difference	t-Statistics	N (chaebols)	N (non-chaebols)
EBITDA/total assets	3.8%	5.1%	-1.3%	-1.36	220	665
EBIT/total assets	0.9%	-0.7%	1.6%	1.84	247	9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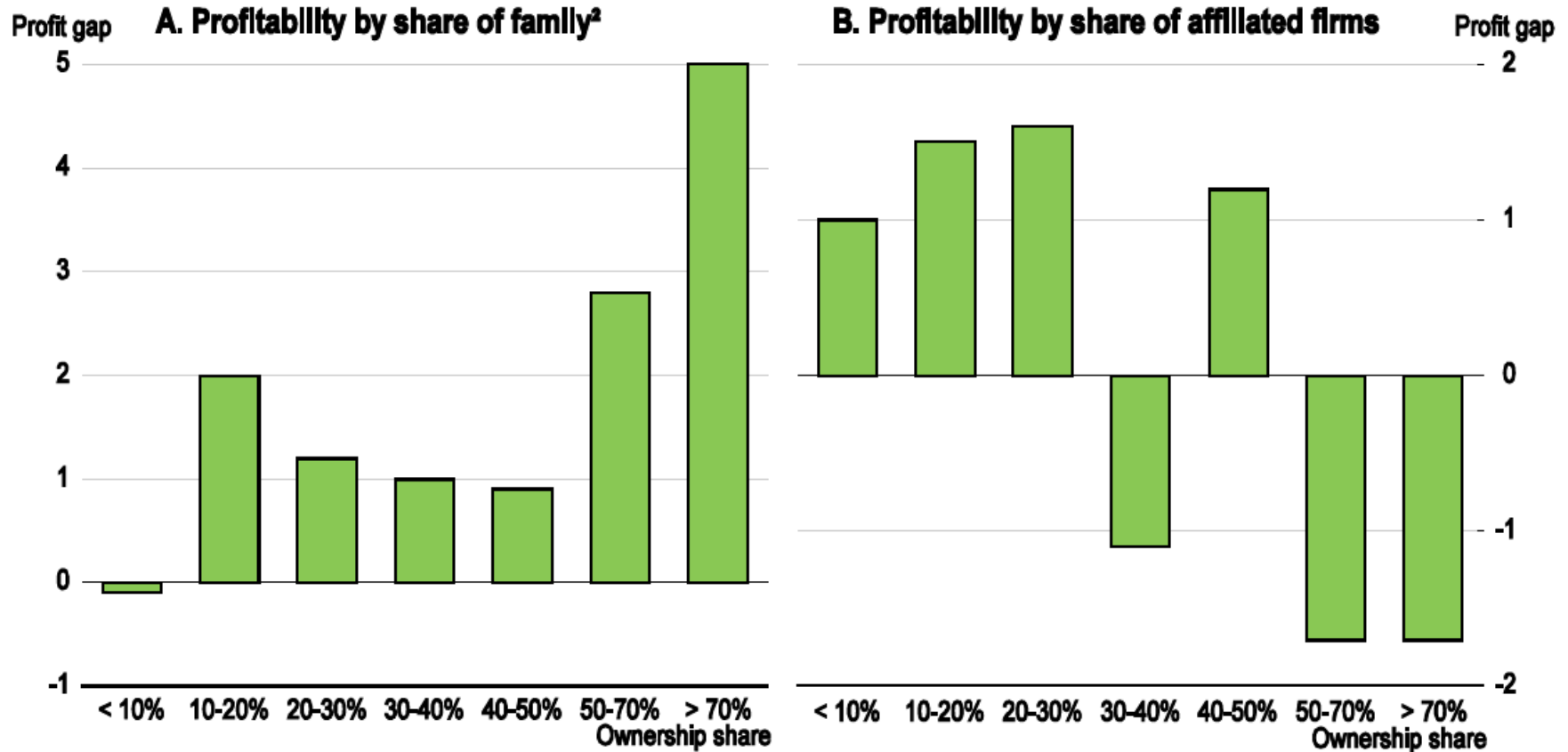
Panel E: All pyramidal subsidiaries vs. horizontal group stand-alones

	All pyramidal subsidiaries	Horizontal group	Difference	t-Statistics	N (pyramidal subsidiaries)	N (horizontal group)
EBITDA/total assets	4.8%	11.4%	-6.7%	-7.15	885	332
EBIT/total assets	-0.4%	5.2%	-5.6%	-7.73	1,232	593



Profitability is linked to inside ownership

The profit gap¹ between group-affiliated firms, classified by ownership shares in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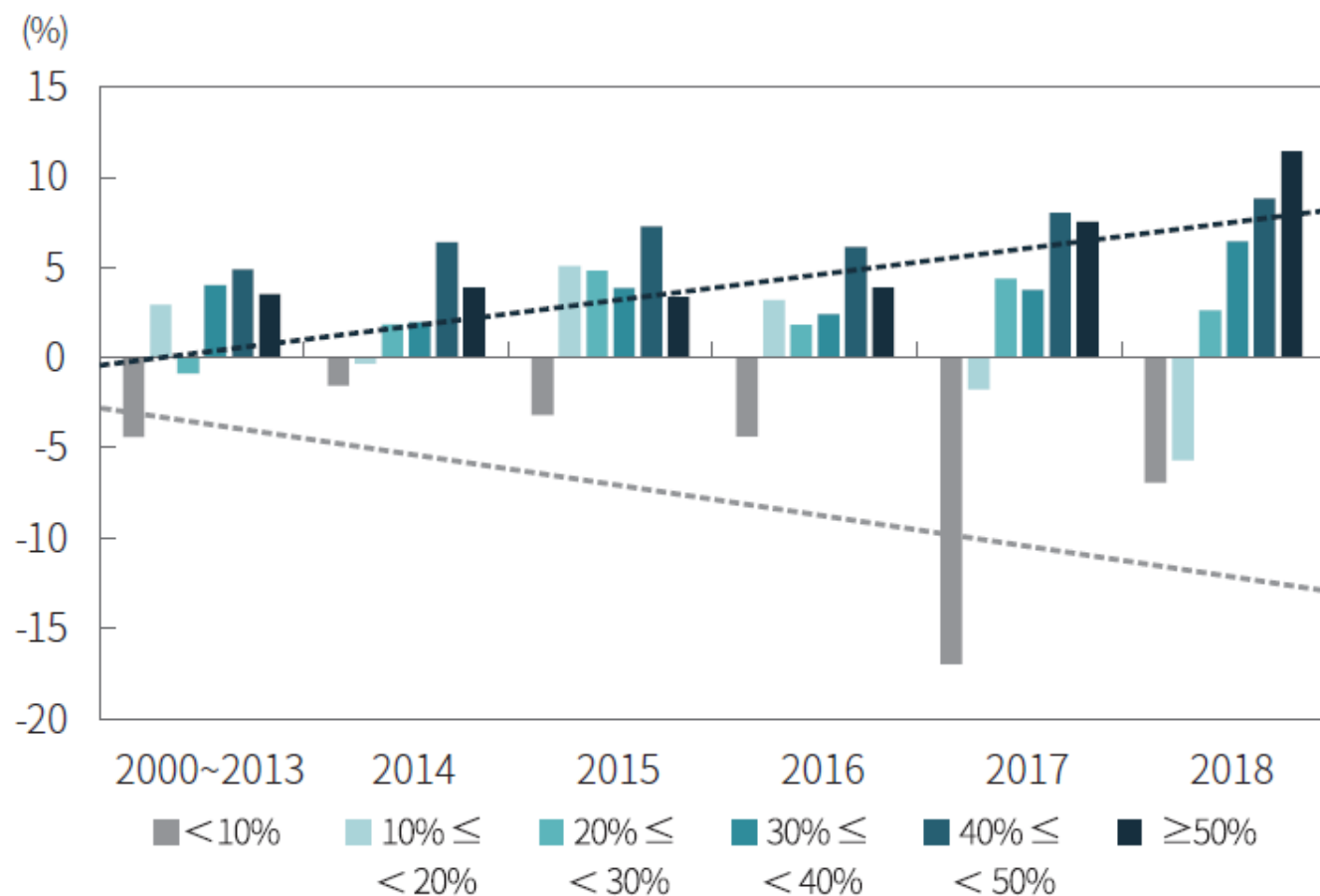
1. The profit rate in individual firms minus the profit rate in the business group to which they belong. A positive number thus means that a firm is more profitable than the business group.

2. The chief of the business group and children.

Source: Lee and Park (2016).

출처: OECD Economic Surveys, Korea, Achieving a new paradigm for inclusive growth, Sejong, 20 June 2018

〈그림 1〉 지배주주일가 소유지분율과 계열기업의 수익성과의 관계



주 : 지배주주 소유지분율에 따른 6가지 그룹 내 계열기업들의 수익성(ROA)의 산술평균을 계산. 최근 5개년 동안은 매년 평균 수익성 값을 표시하고, 그 이전 과거의 경우는 공간의 제약으로 전체 연평균 값으로 대체. 두 점선은 각각 양 극단 그룹의 추세선을 표시.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포털 자료를 토대로 저자가 직접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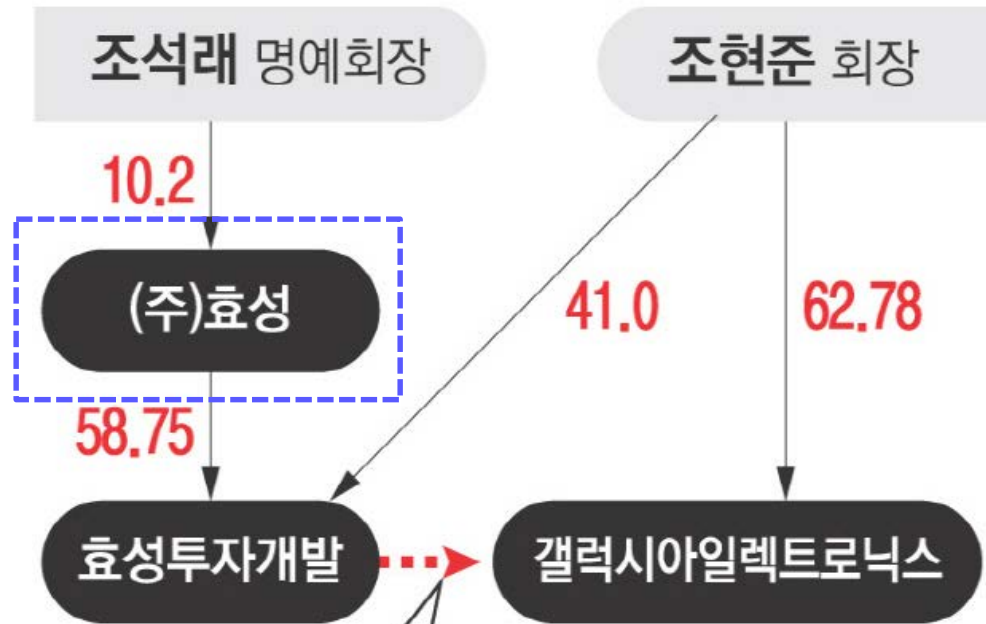
공정위 제재 사례

○ 기업집단 효성 소속 계열회사들의 사익편취 행위 제재(2018년 4월)

- 총수 2세 조현준 지분율이 62.78%인 GE(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의 자금난이 악화되자 HID(효성투자개발)를 중심으로 그룹차원의 금융 지원
- HID에 4,000만 원, GE에 12억 2,700만 원, (주)효성에 17억 1,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HID, (주)효성과 조현준 등 개인에 대한 고발을 결정

효성그룹 사익편취 관련 흐름도

2016년 기준, 단위: %(지분율)



296억원 담보 제공해 전환사채 위험 부담
 계열사 동원해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최대주주 조 회장의 손실 보전해준 셈

출처: 사익편취에 대한 이사회·감사위원회 관련 사례, 삼성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

공정위 제재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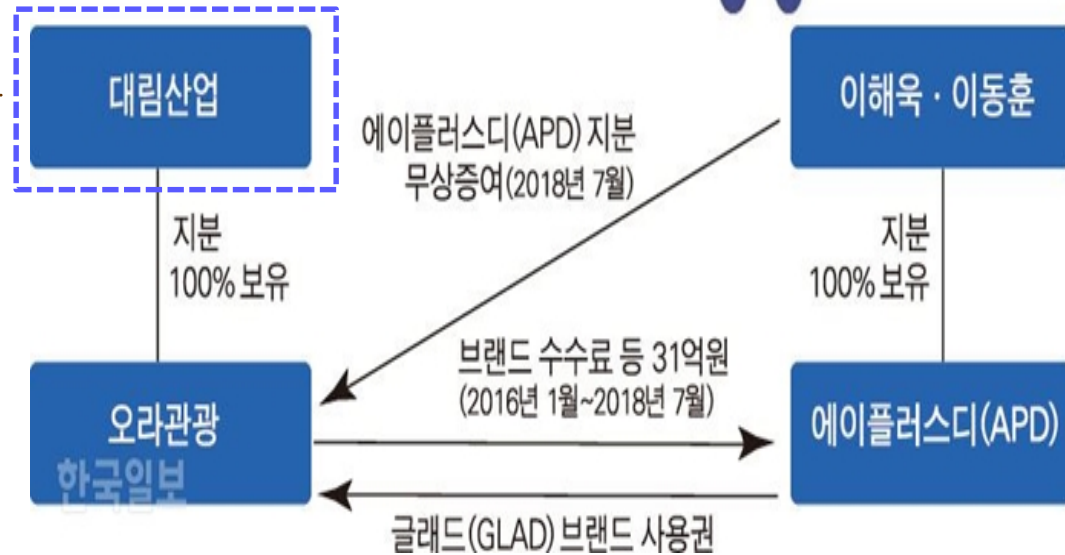
○ 기업집단 대림의 사익편취행위 제재(2019년 5월)

- 총수2세인 이해욱(지분55%)과 3세인 이동훈(지분45%)이 설립한 APD(주)에게 대림그룹 호텔 브랜드(GLAD)사업기회가 제공됨

- 대림산업, 오라관광, APD, 이해욱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대림산업(4억 300만 원), 오라관광(7억 3,300만 원), APD(1억6,900만 원)에 총 13억 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함

- 대림산업, 오라관광, 이해욱을 각각 검찰에 고발함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 공정거래법 위반



출처: 사익편취에 대한 이사회·감사위원회 관련 사례, 삼성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

현행 사익편취 방지 제도의 한계

1. '부당성'에 대한 법원의 해석: 한진 사례

□ 대한항공이 지배주주 3세 지분이 높은 계열사 싸이버스카이 및 유니컨버스에 유리한 조건의 거래로 이익 제공: 신설 23조의2 적용, 총14억원 과징금부과

□ 고법: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의 입법취지와 목적, 입법경과, 문언내용, 법령 해석의 일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부당성'도 독립된 규범적 요건이라고 인정된다...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는..입법취지에 맞게 공정거래 저해성이 아니라 경제력 집중 등의 맥락에서 조화롭게 해석해야 하며, 이와 같은 부당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공정위에 있다..정상거래와 비교해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싸이버스카이가 대한항공으로부터 이득을 본 금액들이 그 기간 매출액의 1%에 불과해, 이 사건 거래를 통해 사익을 편취했다고 보기 어렵다...거래를 통해 얻는 이익이 크지 않는 등 사익편취로 경제력 집중 효과가 발생할 여지가 없거나 극히 미미한 경우에는 '부당한 이익'으로 볼 수 없다...”

“한진 일감몰아주기 공정위 패소 판결은 법원 오해” 2017-10-19

법원이 한진그룹의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제재와 관련해 공정거래 위원회에 패소판결을 한 것은 2013년 입법취지를 오해한 것이라는 증거자료가 국정감사에서 제시됐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13년 8월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규제 신설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때 입법취지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재벌그룹 내부의 부당지원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재판부가 해당 조항의 국회 입법과정에 관한 사실관계를 오해한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부당성’도 독립된 규범적 요건”이라면서 “법개정 당시 ‘정당한 이유없이 특수관계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제상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라는 표현이 ‘부당한 이익’으로 수정됐는데, 이는 별도의 ‘부당성 요건’을 신설한 것인데 공정위가 ‘경제력 집중 유지·강화’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면서 원고인 한진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박용진 의원은 당시 법안 심사자료를 토대로 “표현이 바뀐 것은 기업이 거래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부당한’으로 수정한 것”이라면서 “이는 법원의 판단처럼 ‘부당성 요건’을 신설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이유없이 특수관계인에게 직·간접적으로 경제상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 자체가 부당성 요건 전환이라는 내용이 법안 심사자료에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mailto:jskwak@hani.co.kr) 19

2. 지분율에 의한 지원객체 범위 설정(시행령)의 한계

- (현행) 상장사 30% 이상, 비상장사 20% 이상
- (개정안) 상장사 30%→20% + 50% 초과 지분 보유 자회사까지 적용

□ 본 규제 시행 이전 대규모기업집단들은 계열사간 합병 등을 통해 규제대상 기업에 대한 지분율을 30% (20%) 미만으로 축소

* 삼성 SNS에 대한 총수일가의 지분은 81%였으나, 삼성 SDS(상장 이전)과 합병 후 합병 법인에 대한 지분율 19%로 축소

* 현대차 그룹 총수일가는 글로비스의 지분을 시가보다 2-4% 낮은 가격에 장외에서 매각하여 지분율을 29.99%로 축소

□ 이와 같은 현상은 (이미 상장된) 계열사에 대한 지배주주일가의 직간접 지분율을 축소시킴으로써 오히려 소유/지배 괴리도를 악화시키는 부작용 야기

○ 일감몰아주기로 인한 사익편취는 대부분 상장 시점에 실현, 상장 이후 소유/지배 괴리도의 심화는 해당 회사로부터의 tunneling 유인 증가 우려

○ 즉, 상장 이전에는 지원 객체로서 타 (상장) 계열사의 물량 지원을 통해 성장하고, 상장 이후로는 대규모 사익을 편취하며, 상장 이후에는 지분율 축소에 따라 지원 주체로 전환되어 타 (비상장) 계열사를 지원하는 악순환 발생 가능

○ (이미 상장된 기업의 경우) 지배주주의 직간접 지분율이 높은 것이 이해관계 상충 완화 측면에서 더 바람직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요건)

2. 지분율에 의한 지원객체 범위 설정(시행령)의 한계

□ 개정안의 지분율 기준의 강화 (예. 상장사 지분율 30=>20, 50% 자회사도 포함) 시행시 추가 계열사 합병 및 총수일가의 추가 지분 매각이 예상됨

○ 총수 일가가 매각하는 지분은 (지분이 낮은) 계열사가 매입하여 예전과 동일한 수준의 의결권을 행사하면서 규제 회피 가능

○ 특히, 지주회사 체제 하 기업집단의 경우 지주회사에 대한 지배주주 일가 지분율이 높는데, 지주회사 뿐만 아니라 100%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됨으로써 지분 매각 현상 심화

* LG 서브원 사례

○ 이는 순수한 의미의 수직계열화 (100% 자회사)도 부정하는 결과

○ 이러한 현상은 자회사 지분율 확대를 요구하는 지주회사 관련 규정과도 배치되는 결과

○ 지배주주 일가 지분율 하락에 따른 소유/지배 괴리도의 추가 악화로 위에서 제시한 악순환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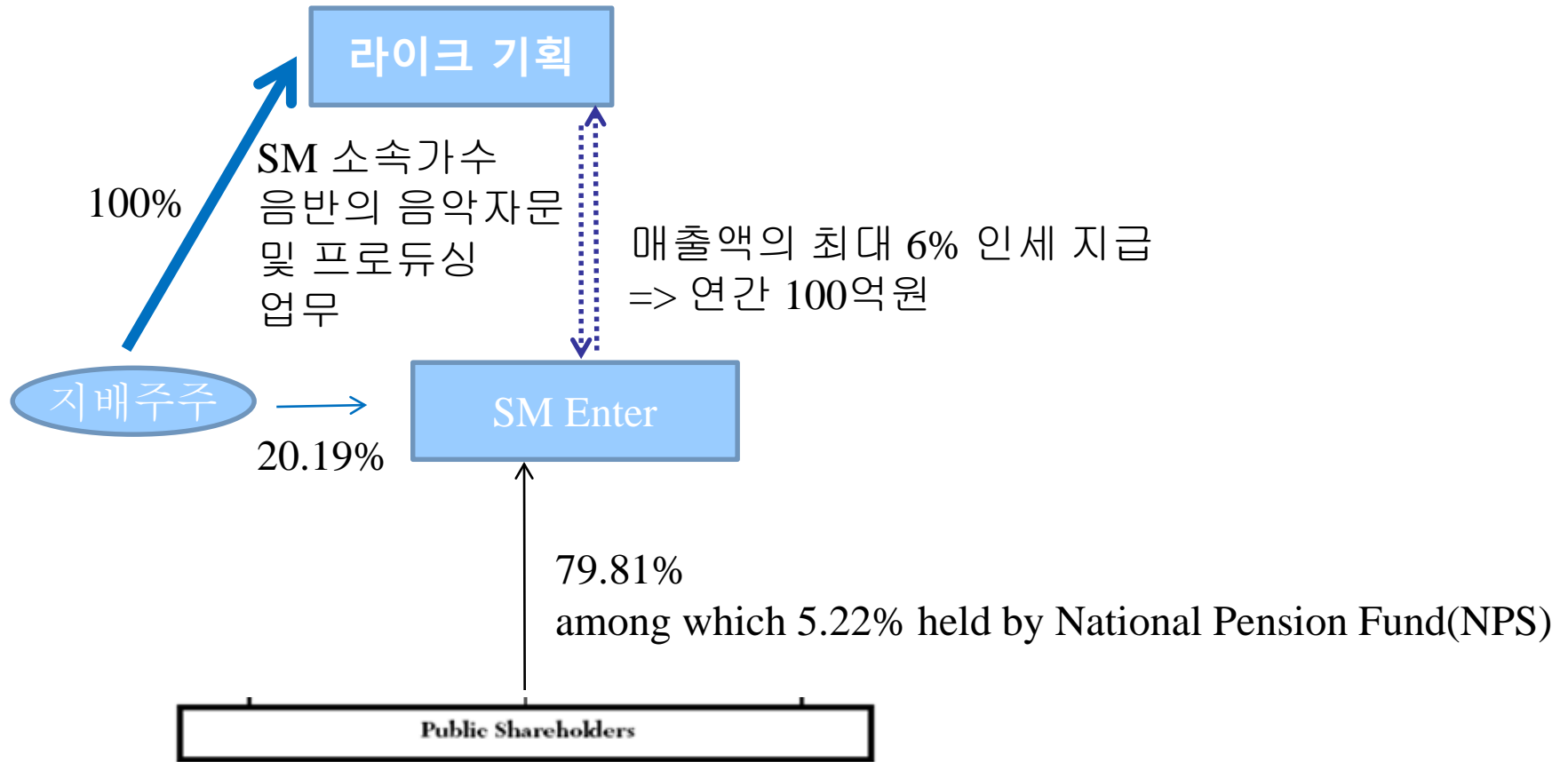
현행 사익편취 방지 제도의 한계

3. 적용 대상 범위의 한계

- 현재 동 규제 적용대상은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 으로 제한
 - 반면, 기존의 부당지원행위 규제는 지원 주체에 대한 제한이 없음
 - 하위 기업집단에서도 유사 거래행태 (회사기회유용+일감몰아주기) 발견됨
 - 개별 상장기업의 지배주주도 개인 회사를 설립하여 회사기회 유용
- 공정거래법상 사익 편취에 대한 규제를 회사법의 보완으로 해석할 경우, 현행 규제 적용 대상이 너무 협소한 측면이 있음

자산규모 5 조원 미만 그룹의 일감몰아주기

	회사명	통일인등의 직간접 지분(%)	문제점
삼양홀딩스그룹	삼양홀딩스	43.30	일감몰아주기
	삼양데이타시스템즈	43.30	일감몰아주기
대성그룹	에스씨지솔루션즈	100.00	일감몰아주기
현대엘리베이터그룹	현대무넥스	54.82	일감몰아주기
무림그룹	무림로지텍	60.03	일감몰아주기
대웅제약그룹	대웅	34.47	일감몰아주기
	대웅바이오	34.29	일감몰아주기
	엠서클	77.99	일감몰아주기
	알피코프	99.84	일감몰아주기
	디앤컴퍼니	54.88	회사기회유용
	시지바이오	39.11	회사기회유용
	이지메디콤	38.99	회사기회유용
아세아시멘트그룹	아세아	43.07	일감몰아주기
	부국레미콘	100.00	회사기회유용
서연이화그룹	서연	46.06	일감몰아주기
	서연인테크	54.69	일감몰아주기
	서연씨엔에프	31.21	일감몰아주기
세방그룹	세방이스테이트	69.45	일감몰아주기
	이앤에스글로벌	92.40	일감몰아주기
	세방산업	60.88	일감몰아주기
대교그룹	대교홀딩스	96.00	일감몰아주기
	대교춘	77.06	일감몰아주기
	타라티피에스	78.70	일감몰아주기
	크리스탈원	100.00	일감몰아주기
휴맥스그룹	휴맥스홀딩스	36.55	일감몰아주기



G20/OECD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F. Related-party transactions should be approved and conducted in a manner that ensures proper management of conflict of interest and protects the interest of the company and its shareholders.

1. Conflicts of interest inherent in related-party transactions should be addressed.

The potential abuse of related party transactions is an important policy issue in all markets, but particularly in those where corporate ownership is concentrated and corporate groups prevail. Banning these transactions is normally not a solution as there is nothing wrong per se with entering into transactions with related parties, provided that the conflicts of interest inherent in those transactions are adequately addressed, including through proper monitoring and disclosure. This is all the more important where significant portions of income and/or costs arise from transactions with related parties.

현행 사익편취 방지 제도의 한계

계열기업간 거래 (내부거래) 평가 기준

		Transaction Price	
		Market	Non-Market
Ownership Structure of one party	100% subsidiary	OK	모자간:OK 실정법상?
	public	OK	Tunneling
	100% family owned	Tunneling (회사기회의 유용/ 일감몰아주기)	

사익편취 방지 제도 개선 방향

현행 공정거래법 체계상의 문제

□ 현행 공정거래법상 (1) 산업 차원 독과점 규제 (2) 기업집단 차원 경제력 집중 억제 (3) 일반 불공정 거래 행위 규제가 제2장, 제3장, 및 제5장에 혼재

제2장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금지
=> (산업차원에서의) 독과점 규제

제3장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 집중의 억제
=> 기업결합, 지주회사, 대규모기업집단

제5장 불공정거래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의 금지
=> 일반 불공정 거래행위, 부당지원행위, 사익편취규제

사익편취 방지 제도 개선 방향

현행 공정거래법 체계상의 문제

- 제3장의 기업결합 제한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에 규제하고 있으므로, 내용상 일반 경제력 집중 보다는 산업별 독과점의 사전 예방 성격
 - 즉,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금지와 기업결합에 대한 제한은 전통적인 산업조직론의 산업별 독과점 규제에 대한 이론적 근거(과소 공급, 가격인상에 따른 소비자 후생 손실 등)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어느 국가나 유사한 규제 운영
- 반면, 지주회사, 대규모기업집단 규제(상호,순환출자 금지 등), 부당지원행위, 사익편취규제는 기업집단 체제를 전제로 한 일반 경제력 집중에 대한 규제임
- 특히, 부당지원행위 (및 사익편취규제)가 제5장에 규정됨에 따라 법원에서 공정거래저해성(경쟁제한성)을 요구하는 상황 발생
 - 사익편취규제에 대해서는 법원이 오히려 경제력 집중에의 기여를 요구

사익편취 방지 제도 개선 방향

개편 방향

□ 부당지원행위 및 사익편취행위는 본질적으로 기업집단체제에서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주주간 부의 이전이 일어나는 **tunneling** 현상으로, 일반 불공정 거래 행위라기보다는 경제력 집중에 따른 대표적인 폐해로 볼 수 있음

□ 이에 따라 현행 제2장, 제3장, 제5장을 다음과 같이 개편하여, 경제력 집중의 (원인) 억제 및 폐해 시정을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제2장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금지 및 기업결합의 제한 => 독과점 규제

제3장 경제력 집중의 억제 및 폐해 시정

=> 지주회사, (대규모)기업집단

=> 부당지원행위/사익편취규제

=> 금융보험사/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계열사간 합병시 의결권 제한 유지 등)

제5장 불공정거래행위 => 일반 불공정 거래행위

사익편취 방지 제도 개선 방향

개편 방향

- 3장에서 규율하는 거래는 공정거래제한성(경쟁제한성) 적용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부당성’ 등 법원의 자의적인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최소화
 - 부당지원행위(부당내부거래)는 기업집단체제 하에서 (또는 일반 상장기업과 지배주주 개인회사간) 일어나는 모든 거래를 대상으로 하되, 거래 조건이 비시장 가격인 경우에 규제 (관련 용어 정비)
 - 사익편취 행위는 기업집단체제 하에서 (또는 일반 상장기업과 지배주주 개인 회사간) 일어나는 모든 거래를 대상으로 하되, 가격의 공정성 여부를 불문하고, 지원객체가 지배주주일가일 경우에 규제 (관련 용어 정비)
- 현재 부당지원행위의 유형으로 규정된 통행제도 내용상 (순수) 사익편취에 더 가까우므로, 사익편취로 통일적으로 규율

사익편취 방지 제도 개선 방향

소결

□ 사익 편취 현상에 대한 이해 및 인식 제고

○ Tunneling으로 인한 이익은 새로이 '창출'된 것이 아니고, 누군가(일반주주)로부터 편취한 것임

=> 지원객체의 이익 방지도 중요하지만, 지원주체의 손해 방지가 핵심

○ 공법적인 '규제' 로 인식하기 보다는 민사의 보완적 규율로 인식할 필요

=> 지원주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 재고 (이미 민사적으로는 손해)

□ 공법적인 '규제' 이외에도 스튜어드십 코드, 기관투자자 행동주의 등 시장에 의한 상호 보완 병행 추진

○ 경영진/지배주주와 (기관)투자자간 소통 확대 및 상호 협력

한국형 기업지배구조의 재설계

- 이상적인 소유지배 구조: 지배가문이 상장 지주회사의 안정적 지분을 직접 보유하고 나머지 회사들인 모두 이 상장 지주회사의 100% 자회사가 되는 형태
 - ⇒ 소유지배 괴리 없고, 지배가문 portfolio 복제 가능
 - ⇒ 기존 block(지배지분) y의 분할/해체는 바람직하지 않음
(ex. 러시아 민영화, 공공부문의 대리인 문제)
- 소유(지분보유)와 경영참여를 분리해서 접근할 필요 (Villalonga & Amit (2006))
 - ⇒ 민사적 구제(ex. Alibaba)의 활성화를 통한 사적 편익의 축소
 - ⇒ 후대의 직접 경영 참여 유인 완화, 대주주/이사로서의 역할
- 이사회/기관투자가(국민연금) 역할 강화: 주요 경영진 선임시 검증
 - 연금사회주의(pension socialism) 경계
- 삼성전자/현대차는 국민기업인가? **Yes, 모든 국민이 (간접)주주!!!!**

Reforming the large business groups

Among firms affiliated with business groups, the gap between the cash flow rights and voting rights of the owner family – which allows them to use their influence for their private benefit – is smaller for those operating in competitive markets, as it discourages rent-seeking.

Since 2001, outside directors must account for more than half of the board of directors in firms with assets of more than KRW 2 trillion. However, dissenting votes are rare, especially when directors have social links to the firm's management.

In the top four business groups, the owner-family's share has fallen to 2.0%, but they maintain control through shareholding among affiliated firms.

Cumulative voting was introduced in 1999, but most firms changed their charters to prohibit it. Electronic voting, launched in 2010, is used by over a third of listed firms.

The concentration of power and wealth in the business groups has led to corruption based on their links to political leaders.

- Strengthen product market competition by relaxing barriers to imports and 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liberalising product market regulation.

- Reinforce the role of outside directors by enhancing the criteria for independence, reducing the role of management in nominating outside directors and requiring that outside directors comprise more than half of the boards in all listed firms.

- Phase out existing circular shareholding by firms belonging to the same business group.

- Make cumulative voting (which would allow minority shareholders to elect directors) and electronic voting (which would help minority shareholders to vote their shares) mandatory.

- Follow through on the government's pledge to not grant presidential pardons to business executives convicted of corruption.

기업 사회적 정당성 저하의 근본 원인 및 대응 방안

- 한국적 소유지배구조하에서 존재하는 기업별 괴리도의 편차를 활용한 tunneling 등 기업(주주)가치를 침해하는 사적 편익의 추구 및 이에 따른 주주간 부의 이전이 본질적 문제
 - 스웨덴은 등 재벌 중심 경제구조이나 투명경영으로 tunneling 미미
 - 독일의 BMW는 지배주주(Quandt 가문)가 이사회를 통해 간접 경영 참여
- Tunneling(자기거래)가 절도행위라는 사회적 인식이 매우 부족한 실정
 - 법적 규제 도입 이유에 대한 근본적 성찰 없는 소극적인 기업의 대응
- 지배주주에 의한 사적 편익 추구가 제한 없이 지속될 경우, 기업의 사회적 정당성은 결코 회복하기 어려움
 - 법적 규제에 대한 소극적 대응을 넘어 적극적으로 시장과 소통할 필요